

별첨 5

장애인·중증장애인 응시자 면접시험 편의제공 기준 안내

□ 편의제공 대상

- 우리 공단 청년인턴 채용 응시자 중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현재,
 -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
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·결정된 사람으로서
 - 시각·지체·뇌병변·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

□ 편의제공 신청방법

- 장애인·중증장애인 편의제공 대상자 중 희망자는,

- 1) 지원서 접수기간에 장애유형별 장애정도에 따른 아래 편의제공 신청

전형단계	장애유형		편의제공 내용
면접 시험	지체장애	상지	-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-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
		하지	- 면접장 내 이동 지원 -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
	뇌병변장애		- 면접장 내 이동 지원 -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-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
	시각장애		-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-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
	청각장애		- 안내사항 등 서면 제공 - 속기사 문자통역 제공 - 보조공학기기(인공와우 등) 지참 허용 -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

※ 기타 편의제공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, 검토 후 지원 예정

- 2) 면접시험 대상자가 되면, 안내에 따라 장애인증명서,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확인서, 진단서 등 증빙서류 제출
- 3) 담당자가 신청내역 및 증빙서류 검토 후 지원 여부 개별 통보

□ 편의제공 신청 유의사항

- ‘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(1페이지)’을 참고하여,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 여부, 편의제공 신청 가능 내용 및 증빙서류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상이등급자의 경우,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정도표를 기준으로,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정도에 해당되는지 참조(장애유형과 정도가 기재된 진단서 등 징구예정)

- 장애인증명서 등 서류로 장애유형·정도 등 지원자가 편의제공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확인이 불가할 시, 의사진단서 등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.

- 의사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(또는 상급종합병원)에서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진단서로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(날인)이 기재되어있어야 하며, 의사진단서가 아닌 입원·통원확인서, 진료확인서, (통원)치료확인서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.

※ 종합병원(또는 상급종합병원)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(www.hira.or.kr) → [병원·약국찾기]에서 조회(반드시 확인 후 발급)